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(전종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601

발의연월일: 2025. 5. 26.

발 의 자:전종덕·송옥주·백선희

주철현 • 양부남 • 문대림

전진숙 · 김재원 · 한창민

이수진 · 이병진 · 윤종오

정혜경·강경숙·김 윤

김종민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예비타당성조사는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의 경제성·정책성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분석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, 대안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고려할 점을 조사하는 제도로,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포함 사업, 지능정보화 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함.

최근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이 유행함에 따라 민간영역에서는 대응하기 힘든 감염병에 대한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, 지역·계층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공공보건의료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,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은 5.4%, 전체 병상수 중 공공병상 비율은 9.7%로,

OECD 회원국 평균 공공의료기관 및 공공병상 비율 52.9%, 71.8%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.

그런데 공공보건의료기관 신축의 경우 공공의료의 특성상 대부분수익성이 낮고, 비용 대비 편익비율이 낮게 나올 가능성이 커 현행 제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쉽지 않고, 실제 2004년부터 2024년 8월까지 10건 중 4건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였음.

이에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방의료원을 신설 또는 증축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에 대응하고,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며 공공의료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(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제2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.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방의료원의 신설·증축 사업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38조(예비타당성조사) ① (생	제38조(예비타당성조사) ① (현행		
략)	과 같음)		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	2		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			
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			
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			
사 대상에서 제외한다.			
1. ~ 10. (생 략)	1. ~ 10.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11.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		
	<u>하기 위한 「지방의료원의 설</u>		
	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		
	따른 지방의료원의 신설・증		
	<u>축 사업</u>		
③ ~ ⑥ (생 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		